

# 제 62 차 이 사 회

- ◆ 일 시 : 2019년 3월 27일(금) 16시 00분
- ◆ 장 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제62차 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2019.03.27(금) 16:00	장소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재적이사	13명(함00, 강00, 서00, 마00, 강00, 고00, 광00, 문00, 박00, 박00, 정00, 허00, 이00 이사)		
출석이사 및 감사	이사: 8명(함00, 강00, 고00, 광00, 문00, 박00, 박00, 이00 이사) 감사: 1명(조00 감사)		
기록자	기획협력팀 노00		

2019년 3월 27일

(개의)

## [제61차 이사회 보고안건]

○ 사회 양00 기획협력팀장

1. 보고안건 '제61차 이사회 결과보고'
2. 보고안건 '2018년도 기부금 실적 보고'
3. 의결안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4. 의결안건 2018년도 지정기부금 결산(안)
5. 의결안건 2018년도 예산결산(안)
6. 의결안건 2018년도 결산잉여금 처분 및 사업예산 변경(안)
7. 의결안건 임원인사규정 제정(안)

## [제190호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토의]

○ 이사 고00

2017년도는 기업회계기준이고 2018년도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고 했는데, 안전에 비교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2017년도 전을 2018년도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인가?

○ 양00 기획협력팀장

네. 이번 결산보고서에는 두 가지 기준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 결산보다 간소함.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 1월 기재부 고시사항이 적용된 부분임.

○ 이사 고OO

내년부터 기업회계기준 결산은 없어지는 것인가?

○ 양OO 기획협력팀장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사장 함OO

감사님과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있었음. 본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90호 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3타).

#### [제191호 지정기부금 결산(안) 토의]

○ 이사장 함OO

현대카드에서 1억 지정기부를 해주셔서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음.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이사장 함OO

의견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91호 지정기부금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제192호 2018년도 예산결산(안) 토의]

○ 이사 문OO

수입금마련지출사업은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가?

○ 양OO 기획협력팀장

네. 현재 지방직영기업은 수입금마련지출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회계원칙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재단은 2011-2013년 해외투어 시 현대자동차에서 협찬을 받아 수입금마련지출사업으로 운영을 해왔음.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의견이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시 재정기획관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에 계상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의 반영을 향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사장 함OO

올해 공연사업 수입 달성률이 69.3%인데 전년도의 달성률은 몇%인가?

○ 양OO 기획협력팀장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한 금액과 달성률이었음. 2016년~2018년 시기에 콘서트홀 건립 대비 및 음악감독 후보자 테스트를 위한 초청 목적으로 공연 횟수가 증가하였음. 공급이 증가하면서 티켓 판매 절대금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회당 수입이 감소한 상황임. 한편으로, 공연 횟수 증가를 위해서는 지출예산 증가 및 수입예산 확대가 불가피하였음.

○ 이사 이00

일정 수준의 소액후원 모집을 목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도 소규모로 시작해서 후원회원을 조직하여 해당 인원이 정기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공연 횟수는 1년에 100회 정도인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서울시향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공연수익의 문제를 떠나 객석점유율이 높아지고 공연이 매진되는 과정이 반복될 때 공연 포트폴리오도 발전할 수 있음. 현재 시향이 지향하는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후원회 체계 구축전략 및 관객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음악감독 취임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이사장 함00

음악감독 선임 후 지적하신 사항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임.

○ 대표이사 강00

후원회 체계정비는 필요함. 전반적인 후원회와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구하고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이사 이00

내부적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사회 결의로 특별 TFT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사 문00

작년 같은 시기에 개최한 이사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요구했었음. 단순한 예산보고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함께 보고/논의되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대표이사 강00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향이 현재 수행사업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정원 확보 및 내부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나, 금일 이사회에서 제안해주신 TFT 추진 시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사 박00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가 있으나, 현재 재단의 기부금제도는 방향성과 전략이 보이지 않아 기업에게 적극 권유하기에 한계가 있음. 기업은 기부를 통해 얻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야 하나, 해당 부분이 불분명함. 금일 이사회 제안대로 TFT 추진을 통한 기부금/후원회 체계 정립은 시장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이사 이OO

TFT에 이사님 두 분, 감사님 1분 정도가 포함되어 조속히 발족되는 것을 권유함. 의제는 기부금, 협찬, 관객개발, 후원구조와 이를 위한 인프라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예술적 수월성은 음악감독 취임 후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장 함OO

TFT를 제안해주신 이OO 이사님이 TFT총괄, 박OO 이사님, 강OO 이사님, 정OO 이사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함. 이 자리에서 확정하기보다는 이OO 이사님이 TFT를 총괄하시면서 각 인력의 적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주신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로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음. (의사봉3타)

**[제193호 2018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2019년도 사업예산 변경(안) 토의]**

○ 이사장 함OO

의안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이사 일동

없음.

○ 이사장 함OO

그렇다면 의안번호 제193호 2018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2019년도 사업예산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의사봉 3타).

**[제194호 임원인사규정 제정(안) 토의]**

○ 이사 문OO

서울시에서는 4조의 변경을 수용하나 8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인가?

○ 양OO 기획협력팀장

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률에서 비상임 임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사장 함00

60차 이사회 때 이사님들의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하나는 부정청탁, 금품 관련 내용보다는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진의 금융 관련 부분의 조사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부분이었음.

○ 이사 고00

임원인사규정을 보면 임원을 재단의 이사장, 대표이사 및 근로자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인가?

○ 양00 기획협력팀장

네.

○ 이사 고00

임원의 인사권자가 누구인가?

○ 사회 양00 기획협력팀장

서울시장임.

○ 이사 고00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사들의 수용여부를 가리는 것 외 추가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해당 사항의 권한이 있을 경우에 적용됨. 이사회가 직원감독 시 스스로 권한으로 행사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나, 해당 안건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진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아님. 결론적으로 임원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이 다르고, 본래의 규정 성격과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음.

○ 이사 박00

지난 이사회 때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4조 2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이사진이 어떤 혐의에 연루 되었을 경우, 재단의 이사진은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 감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중요 문제제기 사항이었음. 그러나 금번 안건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사 고00

이사회에서 권한이 있는 부분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이상의 의미가 없음. 규정으로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이사 박OO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 사회 양OO 기획협력팀장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서울시 배포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규정으로 제정하였음.

○ 이사 박OO

청렴의 의무 관련 조항은 서울시에서 전체기관에 똑같이 적용을 권고한 것인가?

○ 사회 양OO 기획협력팀장

네.

○ 이사장 함OO

지난 이사회 부결 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상근이사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고 참여하는 상근이사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음.

○ 대표이사 강OO

재단 실무자보다는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임원인사규정 제정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팀장

서울시에서는 윤리경영, 청렴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임원/간부들의 부패, 성범죄 등이 문제가 되고 보도되었음. 서울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부적으로 해당 부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해당 안을 권고사항으로 산하기관에게 권고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수용했으나 시향에서만 적용을 달리하여, 원안 준용을 요청하였음

○ 감사 조OO

통상 임원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사회가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규정을 정하는 것임. 그런데 시향은 임면권자가 서울시장이므로 서울시장의 조치내용을 이사회가 임원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규정 정합성에 맞지 않음. 상급조례로 제정하거나 산하단체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재단 정관상으로 보면 이사회 심의/의결 안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사 고OO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에 해임권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없음.

○ 감사 조00

정관에서도 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없음. 사항 규정과 맞지 않음.

○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팀장

서울시에서는 (안)으로 권고했고, 임직원 인사규정은 자율경영, 책임경영 차원에서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안)을 권고한 것임.

○ 감사 조00

통상 다른 일반 비영리재단이나 사기업은 이사회가 이사들의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제정이 자연스럽지만 서울시향은 시장이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음. 조직 구성이 상이한데, 맞지 않는 부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팀장

실제적인 상근과 비상근임원 구별이 현실적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임원을 구분하지 않음. 임명장 수여 및 적용 시에도 분리하지 않음.

○ 감사 조00

상근임원의 감독권 관련해서는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사진의 의견이었음. 덧붙여 임원인사규정(안) 4조는 사항의 정관구성과 맞지 않음. 다른 비영리재단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이사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산하기관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모르겠으나, 통상 비영리 재단에서는 이사회에서 함.

○ 이사 고00

상근임원이나 직원 관련 인사관리 규정 제정은 가능한 부분임.

○ 이사 이00

다시 수정하고 협의해서 차기 이사회 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점이 있는 부분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사장 함00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조00 감사님이나 고00 이사님께서 관련한 의견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음. 금일 이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안번호 제194호 임원인사규정 제정(안)은 부결하고, 제기된 의견 관련 부분을 보완하거나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추후 안건으로 재상정 하도록 하겠음(의사봉3타).